

순천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

제정 2009. 7. 15.

개정 2016. 5. 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순천대학교(이하 '이 대학교'라 한다) 자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'자체평가'는 이 대학교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시기) ①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, 수시평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.

제4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이 대학교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자체 평가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대학원장, 단과대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 및 기획부처장으로 한다.(개정 2016.5.4.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평가과 주무로 한다.

제5조(자체평가연구위원회) ① 평가관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(이하 '연구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연구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평가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이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지표 개발 및 보완
2. 자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 실시
4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5. 기타 총장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
④ 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연구위원회 위원에게는 자체평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자체평가 절차) ① 총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자체평가 편람을 포함한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연구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 및 교육·연구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에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료제출 등 협조) 이 대학교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9. 7. 1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5. 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